

이 보도자료는 2019. 2. 12.(화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<b>검찰</b> PROSECUTION SERVICE	<b>의정부지방검찰청</b> <b>고양지청</b> 공보담당관 자장검사 신호철 전화 031-908-7152 / 팩스 031-909-4304	<b>보도자료</b> <b>2019. 2. 12.(화)</b> 자료문의 : 여성·강력범죄전담부장 전화번호 : 031-908-9415 주책임자 : 부장검사 김정호
---	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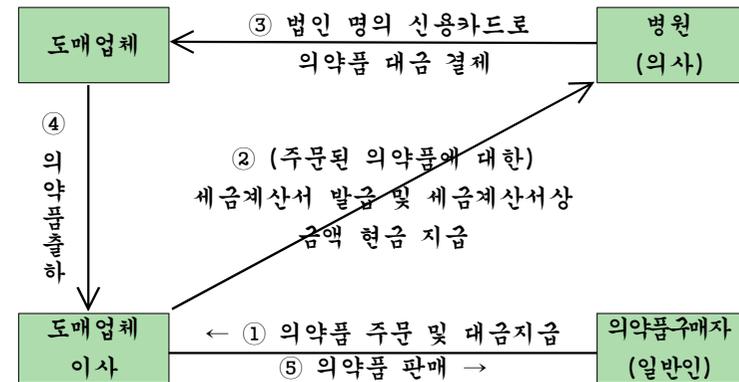
## 제목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사건 수사 결과

### 개요

- **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여성·강력범죄전담부**(부장검사 김정호)는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가 일반인에게 보톡스 등 주사제를 불법유통하는 과정에서,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원(의사),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반인 등 41명에 대해 의료법위반, 약사법위반,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 혐의로 2. 8.(금) 사건 처리하였음
- 수사결과,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인 주사제 등은 병원에서 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이용, 의약품 도매업체는 병원에게 보톡스 주사제가 포함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① **병원**은 세금신고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**세금을 적게 내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**하고, ② **도매업체**는 빼돌린 보톡스 등을 **일반인에게 판매**하고, ③ 이를 구입한 **일반인**은 **돈을 받고 무면허의료시술**을 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의 전과정이 확인됨
- 본건 수사로 총 41명을 인지하여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와 병원장, 무면허 보톡스 시술자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,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, 4명은 약식 기소,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송, 1명은 지명수배하였음
-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전문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고,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전문의약품 유통 관련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**제도 개선**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였음

## 1 사안의 개요

- **전문 의약품 불법유통 발생 원인**
  - 전문의약품 거래는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간 거래만 가능
  - 따라서 일반인은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직접 구입이 불가능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간 허위 거래를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을 구입
- **전문 의약품 불법유통 관련 수익구조**
  - 의약품 도매업체 : 의약품 판매 매출 증가로 인한 성과급 및 수익창출
  - 병원 : 도매업체 직원으로부터 전문의약품 공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병원의 매입 증가로 세금을 적게내는 이익을 취득
  - 일반인 : 돈을 받고 무면허로 보톡스 시술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태반주사 등 고가의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



## 2 주요수사경과

- 마약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사실 확인
  - 2018. 5. 2. 간호조무사 ○○○이 밀수입한 대마종자 관련 내사착수
  - ※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대마종자 밀수입 정보 입수 및 공조수사 진행

- 2018. 5. ~ 9. ○○○의 필로폰 투약 혐의 확인, 휴대폰 통화 및 계좌 거래내역 조사
  - ※ 일반인과 태반주사 판매 관련 문자 송수신,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
- 2018. 11. 6. 의약품 도매업체 및 병원 압수수색영장 집행
- 2018. 11. 6. ~ 11. 30. 계좌·압수물 분석 및 의약품 도매상 이사 △△△ 조사
- 2018. 12. ~ 2019. 2. 의사, 일반인 등 50명 조사

### 3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# 1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: 1명 불구속 기소

- 일반인들에게 6억원 상당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, 병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병원장들에게 합계 4억 6,000만원 상당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**약사법 위반**

#### 2 병원장 및 원무과장 : 의사 5명, 원무과장 1명 불구속 기소

- 위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로부터 거래유지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자료로 제출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**의료법 위반**
- ※ 이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고발의뢰

#### 3 무면허 보톡스 시술자 : 6명 불구속 기소

-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위 의약품도매업체 이사로부터 구입한 보톡스로 환자들에게 시술을 하여 **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(부정 의료업자)**

#### 4 전문의약품 구입자 : 1명 불구속 기소, 4명 약식 기소, 22명 이송, 1명 지정수배

-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**약사법 위반**
- ※ (별첨)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내용

## 4 수사의 의의

### 1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과정 적발

- 의약품 도매업체는 일반인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주문을 받으면, 병원장에게 주문받은 의약품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,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의약품을 출하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, 일반인들은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함
- 의약품 도매업체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병원장에게 지급하고, 병원장은 해당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병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, 그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구조임
- ※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폐단
  -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의 위험성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므로, 철저한 사전 관리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성 높음
  - 일반인들에게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여 의약품 관리에 대한 **사회적 신뢰를 저해**하고, 무면허 보톡스 시술 등 전문의약품의 오·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**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**

### 2 제도적 문제점 및 제도개선

- **병원은 전문의약품 중 보톡스 등 주사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전량 소비 처리**하므로, 이를 악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체가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문제점 확인
-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보건복지부에 **전문의약품 중 '소모품 사용 대장', '소모품 재고관리대장'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**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음

## 5 향후 대책

-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의약품 도매업체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 및 불법유통 실태를 적발한 뒤 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관련자를 추적하여 엄단하고, 제도개선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등 **향후에도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**

##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내용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○○ (도매업체 이사, 49세)	2013.경부터 6억원 상당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, 병원에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병원장에게 합계 4억 6,000만원 상당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(약사법위반)	구공판
2	B○○ (간호조무사 40세)	필로폰 1회 매매, 필로폰 1회 투약 527만원 상당 전문의약품 구입 [미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, 약사법위반]	구공판
3	C○○ (의사, 44세)	2014.경부터 합계 2,651만원 상당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 (의료법위반)	구공판
4	D○○ (의사, 71세)	2014.경부터 합계 5,056만원 상당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 (의료법위반)	구공판
5	E○○ (의사, 50세)	2013.경부터 합계 1억 4,200만원 상당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 (의료법위반)	구공판
6	F○○ (의사, 49세)	2016.경부터 합계 752만원 상당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 (의료법위반)	구공판
7	G○○ (원무과장, 36세)	2013.경부터 합계 7,664만원 상당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 (의료법위반)	구공판
8	H○○ (의사, 49세)	2013.경부터 합계 7,664만원 상당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 (의료법위반)	구공판
9	I○○ (간호조무사 48세)	2013.경부터 6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하여 그대가로 137만원 수익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	구공판
10	J○○ (간호조무사 56세)	2013.경부터 40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하여 그대가로 1,540만원 수익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	구공판
11	K○○ (일반인, 48세)	2013.경부터 53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하여 그대가로 746만원 수익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	구공판
12	L○○ (간호조무사 40세)	2015.경부터 10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하여 그대가로 270만원 수익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	구공판
13	M○○ (간호조무사 40세)	2015.경부터 32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하여 그대가로 578만원 수익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	구공판
14	N○○ (간호사, 38세)	2013.경부터 5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하여 그대가로 50만원 수익, 1,913만원 상당 전문의약품 구입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, 약사법위반]	구공판
15	O○○ (간호조무사 51세) 등 4명	2013.경부터 1,002만원 상당 전문의약품 구입 등 (약사법위반)	구약식
16	P○○ (간호조무사 53세) 등 22명	2013.경부터 590만원 상당 전문의약품 구입 등 (약사법위반)	이송
17	Q○○ (일반인, 61세)	2015.경부터 445만원 상당 전문의약품 구입 (약사법위반)	지명 통보